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포장재 무상 회수 대상을 판매업자가 설치하는
대형제품으로 한정〉

■ 조지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3954호)

2026. 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포장재 무상 회수 대상을 판매자가 설치하는 대형제품으로 한정	2
※ 참고자료 : 전기·전자제품 EPR 대상 전품목 확대 개요	7

I. 제안경위

2025년 11월 6일 조지연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11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는 구매자가 신제품을 구입하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로 배출한 같은 종류의 제품과 신제품의 포장재를 무상으로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세탁기나 냉장고 등 대형제품을 가정에서 자체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를 고려하여 제조·수입·판매자가 설치와 동시에 회수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된 것이며, 50개 품목에 대하여 한정적으로 운영되어 왔음.

그런데 시행령 개정으로 2026년부터 회수 의무 적용 품목이 전체 품목으로 확대될 예정에 따라 방문 설치를 하지 않는 소형 전자제품도 무상 회수 의무가 발생하게 되어 판매업자 등에게 과도한 책임이 부과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회수 대상 제품을 구매자를 대신하여 설치하는 대형제품으로 한정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회수의무자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16조의4제5항 후단 신설).

Ⅲ. 검토의견

1. 포장재 무상 회수 대상을 판매자가 설치하는 대형제품으로 한정

개정안은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 등이 신제품 구입 시 무상으로 회수해야 하는 포장재의 범위를 판매업자가 직접 방문하여 설치하는 대형제품의 포장재로 한정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4제5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6조의4(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 및 인계의무 등) ① ~ ④ (생략)	제16조의4(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 및 인계의무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는 구매자가 신제품을 구입하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로 배출한 같은 종류의 제품(다른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공급한 같은 종류의 제품을 포함한다)과 신제품의 포장재를 무상(無償)으로 회수하여야 한다.	⑤ ----- ----- ----- ----- ----- ----- ----- ----- ----- -----
<u><후단 신설></u>	<u>이 경우 포장재의 무상 회수 대상은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가 구매자를 대신하여 설치하는 대형제품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u>

현행법은 전기·전자제품 등의 자원순환체계 구축을 위하여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또는 수입액 3억원 이상인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자(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함) 및 전년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인 전기·전자제품 판매자(이하 “판매업자”라 함)에게 자신이 제조·수입·판매한 제품에 대한 회수 및 재활용의무를 부여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규정¹⁾하고 있으며,

EPR 대상품목은 2003년 냉장고, 세탁기와 같은 대형생활가전기기 등 6개에서 시작하여 2026년 1월부터 일반 전기·전자제품 전 품목으로 확대²⁾되었음.

1)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5조(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인계·재활용의무) 전기·전자제품의 사용 후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전자제품을 제조(주문자의 상표를 붙이는 방식에 따라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 주문을 말한다)하거나 수입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이하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는 자신이 출고한 제품의 폐기물을 회수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인계하여 재활용하거나 제21조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공동으로 회수 및 인계·재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전기·폐전자제품의 회수 및 인계·재활용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부담한다.

제16조의4(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 및 인계의무 등) ① 전기·전자제품의 사용 후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이하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라 한다)는 자신이 판매한 제품이 속한 제품군 내의 폐전기·폐전자제품을 스스로 회수하거나 공제조합에 가입하여 회수의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회수·인계·재활용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 ① 법 제15조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전자제품”이란 직류(DC) 1천500볼트 이하 또는 교류(AC) 1천볼트 이하의 전압에서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전기·전자제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각 호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의 제품군별 분류는 별표 3에 따른다.

제14조의2(회수·인계·재활용의무 대상 사업장) 법 제15조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이란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의무이행 전년도 전기·전자제품의 매출액: 10억원 이상
2. 의무이행 전년도 전기·전자제품의 수입액: 3억원 이상

제15조의5(회수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 법 제16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전자제품”이란 제14조제1항에 따른 회수·인계·재활용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을 말한다.

제15조의6(회수의무 대상 사업장) 법 제16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이란 제15조의5에 따른 전기·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장으로서 의무이행 전년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제외한다. (각 호 생략)

2) 대상품목 : '03년(6개) → '08년(10개) → '14년(26개) → '20년(50개) → '26년(전품목)

[회수·인계·재활용의무 대상 품목(2026. 1. 1.시행)]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품군	대상 제품
1. 특정 재활용 대상 제품	가. 냉장고, 에어컨 등 냉매를 포함하는 기기 나. 세탁기, 러닝머신, 전기안마기
2. 일반 재활용 대상 제품	가. 디스플레이기기(100㎠ 이상의 화면을 포함하는 기기만 해당한다) 나. 이동전화단말기 다. 통신·사무기기(이동전화단말기는 제외한다) 라. 그 밖의 일반 전기·전자제품
3. 태양광 패널	태양광 패널

또한, 현행법 제16조의4제5항3)에 따라 구매자가 신제품을 구입하는 경우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판매업자는 폐기물로 배출된 같은 종류의 제품 및 신제품의 포장재를 무상으로 회수하여야 하는데,

이는 배출이 어려운 대형 전기·전자제품을 방문하여 설치할 때 폐제품과 포장재 수거를 병행함으로써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원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임.

그런데, EPR 대상품목의 확대에 따라 방문 설치 공정이 없는 소형 전자제품(택배 배송 등)에 대해서도 포장재 무상 회수 의무가 발생하

3)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 및 인계의무 등) ⑤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는 구매자가 신제품을 구입하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로 배출한 같은 종류의 제품(다른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공급한 같은 종류의 제품을 포함한다)과 신제품의 포장재를 무상(無償)으로 회수하여야 한다.

게 되어 판매업자 등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개정안은 포장재 무상회수 의무 대상을 방문설치를 하는 대형 제품으로 한정하려는 것으로, 의무 이행 범위를 현장의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으로 판단됨.

다만, 현행법은 무상회수 의무 주체를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판매업자로, 회수 대상을 폐기물로 배출한 같은 종류의 제품과 신제품의 포장재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 또한 법적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문안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수정의견]

개정안	수정의견
제16조의4(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 및 인계의무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의4(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 및 인계의무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⑤ -----
-----	-----
-----	-----
-----	-----
-----	-----
-----	-----
-----	-----
-----	-----

----- . 이 경우 포장재의 무상 회수 대상은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가 구매자를 대신하여 설치하는 대형제품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 이 경우 폐기물로 배출한 같은 종류의 제품 및 해당 신제품 포장재의 무상 회수 대상은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가 구매자를 대신하여 설치하는 대형제품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무상회수 대상을 한정하는 개정 취지에 동의하지만 대상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548

※ 참고자료 : 전기·전자제품 EPR 대상 전품목 확대 개요

□ 추진 배경

- 폐전기·전자제품에 대한 회수 체계 고도화*, 재활용 기술개발 등을 반영하여 **안전한 처분**(폐기물부담금**)에서 **재활용(EPR)**으로 정책 전환 필요

* 무상방문수거('13년~, 수거차량 200여대 수집), 수거함 보급 등

**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에 처리비용 부과

- '03년 EPR 도입 이후 전 품목을 목표로 대상 확대 추진, 제도 성숙에 따라 이해관계자 논의를 통해 전 품목 확대 개정 가시화

※ 대상품목 : '03년(6개) → '08년(10개) → '14년(26개) → '20년(50개)

□ 주요 개정 내용

- (회수·재활용 대상) 기존 50종 ⇒ 개정 전 품목 확대('26.1.1~)

※ 세탁기, 냉장고, TV, 컴퓨터 등 중대형 기기 50종에 대해 선택적 관리 ⇒ 산업기기, 대형기기, 군수품 등 제외 항목 외 전 품목 관리(EU와 동일 수준)

- (제외 항목) 현행 재활용 체계에서 처리가 어려운 일부 산업기기, 감염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 연구개발기기 등을 제외(~'25.12, 고시* 개정)

* 환경부고시 제2020-303호(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전자제품)

- (생산자의무 변경) 전기·전자제품 EPR 신규 적용 대상 폐기물부담금(약 200억 원) 부과 제외, EPR 부담금 납부(약 150억 원)

□ 기대효과

- (자원순환 촉진) 신규 품목의 재활용량 증가로 현행 대비 약 7.6만 톤 증가(18%↑), 41.5 → 49.1만 톤)

- 재활용 확대로 유가자원 회수(철, 비철금속 등), 유해물질 유출 저감,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 약 2천억 원 이상 환경적·경제적 편익 발생

※ 유가자원 회수(1,143억), 유해물질 사후 처리비용 저감(887억) 등